

호주의 가입자선로 적자보전금(Access Deficit Contribution)

폐지 방안 연구

조은진, 변재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An Study on Removal of Access Deficit Contribution in Australia

Eunjin Cho, Jaeho Byun

ETRI

요 약

호주는 소매 요금 규제로 인해 가입자선로 비용을 기본료를 통해 모두 회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착발신 서비스 접속료에 가입자선로 적자 보전금을 부과하여 산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입자선로 적자보전금 제도로 인해 접속료 산정 기본 원칙인 비용기준 원칙을 위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투자와 경쟁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입자선로 적자 보전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논의된 배경과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유선접속료에 부과된 가입자선로와 관련된 운영비용을 인하 및 폐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호주의 가입자선로 적자 보전금(ADC) 제도

I. 머리말

유선전화사업자 입장에서 가입자선로는 투자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진입 사업자에게는 진입장벽이 되고 고객 기반 서비스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화사업자들은 이윤창출을 위해서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비용 지역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통해 개입하여왔다. 전화사업자들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요금을 통해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호주 규제기관인 ACCC는 소매요금 규제로 인하여 전화사업자가 기본료를 통해 가입자 선로 비용을 전부 회수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기본료를 통해 회수하지 못하는 가입자선로 비용은 접속료에 부과하여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접속료 산정기준인 원가기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ACCC에서도 이를 해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입자선로 적자금(AD)와 가입자선로적자 보전금(ADC)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폐지하는 대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요

호주의 ADC 제도는 1999년과 2000년 협정서(Undertaking)부터 도입되었다. 호주의 규제기관인 ACCC는 AD를 인정하고 Telstra가 PSTN 발착신 접속료를 산정하는데 전송비용에 ADC를 추가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이 제도는 통신법 Part XIC 조항에 의거하여 장기적인 최종이용자 편익(LTIE:Long-Term Interests of End users)을 목적으로 이용 효율성(efficiency in use), 효율적인 투자와 경쟁활성화이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될 당시 ACCC는 소매 요금 통제를 완화하여 Telstra가 AD를 폐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기본료(line rentals)에 대한 지속적인 소매 요금 규제(retail price cap regulation)가 존재하는 한 AD를 회수하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고속이용자를 통해 AD를 지원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

통신법 Part XIC 조항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PSTN의 착발신 요금은 TSLRIC 방식으로 산정한 전송요금(conveyance charge)과 ADC로 결정된다.